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10. 2. 25(목) 14:00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공청회 일정표

시 간	내 용
13:30~14:00	· 등 록
14:00~14:10	· 인사말씀 - 김원종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관 -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14:10~14:40	· 주제발표 : 김수봉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40~15:50	· 토 론 - 좌장 : 진민자(늘푸른장사문화원 이사장) - 토론 : 강동구(동국대학교 생사의례학과 교수) 서석완(대한병원협회 기획조정실장) 김석제(한국장례업협회 사무총장) 박태호(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정책실장) 황규성(을지대학교 교수) 김태훈(경기도 노인복지과장) 신승일(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장)
16:00~16:30	종합토론

□ 주제발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1

- 발표자 : 김수봉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별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I.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요약

□ 개정 사유

- 수요자 중심의 장사문화 환경조성
 - 장사수요변화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보장
 - one-stop 장례서비스기능 강화
 - 화장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확충 및 이용의 접근성 개선
- 장사산업 발전기반 구축
 - 장례식장영업 신고제 환원
 - 장례식장의 지역산업발전 참여
 - 화장로 등 화장시설 설치장소 완화
- 효율적 장사정보전달체계 구축
 - 사망관련 자료 보고체계 확립
 - 장법관련 정보자료 전산망 집적
 - 장사시설 현황 및 이용관련 정보 제공
 - 사망관련 사회보장 급여 전달체계 연계

□ 주요 골자

- 화장로 설치가능 시설의 확대 등 화장수요에 적극 대처
 - 전문장례식장 화장서비스 허용(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 제외)
 - 개장유골을 현존지에서도 화장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사시설의 예약, 이용 및 관리 등을 전자적 방법에 따라 처리(장사정보종합시스템 구축·운영)

- 의료인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포함) 등을 발급하거나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례의식 등을 행할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
- 사망자 인적사항을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통합 전산망) 또는 공공단체에 신속히 알리도록 함.
- 지자체간 원활한 공동 장사시설 설치·조성, 이용을 유도
- 현재 자유업인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
 - 장례식장의 설치기준 및 장례식장안에서의 시체의 안치·염습 등에 관한 보건위생관리기준을 규정함.
- 화장시설 공급의 촉진·장려를 위하여 사설 화장시설 및 화장로 설치·관리에 대해서도 비용보조 확대

II. 주요 개정내용

1. 국립묘지의 다양한 장사시설 수요에 대응

- 장사문화의 환경변화로 다양한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가 나타남
 - 국립묘지의 경우에도 묘지뿐만 아니라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제3조(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관한 적용배제)

⇒

제3조(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배제)

2. 화장시설(화장로) 설치장소 완화

- 화장시설 및 일부예외 장소(사찰의 전통다비의식, 화장시설 없는 도서벽지)에서만 화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장례식장내에서 또는 개장유골을 현존지에서도 화장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 화장시설 신규설치에 따른 문제점

- 화장시설 신규설치, 화장로 증설은 입지제한 등의 규제와 주민·지역간 갈등유발로 설치난항
- 수도권 등은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화장시설 신규설치 지역·공간 제한, 주민반대 등

□ 장례식장·개장유골 현존지에서 화장에 따른 기대효과

- 화장시설 설치부담 완화
- 장례시간 및 경제적 비용 경감 등 유족 편의 증대
 - 장례기간 연장(4일장) 방지 및 대기 시간 경감(약 3~5시간 → 1시간 미만)
 - 인근 화장시설로 영구차 이동 경비 절감(약 40~50만원 → 없음)

- 화장시설 접근성 용이 및 화장여건 증대로 화장장려 촉진 기대
- 소비자중심의 one-stop 장사서비스기능 강화
 - 사망후, 장례 ⇨ 시신처리 등이 가능한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 지도록 함.
- 장례식장 영업환경의 개선
 - 지역산업발전 차원에서의 장사시설확충
 - 장례식장 영업환경 개선
 - 지역 일자리 창출
 - 공급과잉, 중복투자 및 과당경쟁 배제
- 전문장례식장 화장서비스 허용(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 제외)
 - 화장률 증가와 화장시설 확충이 담보상태임.
 - 장례식장의 영업기반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단, 친환경적인 화장시설의 운영관리가 필연적이므로,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규제, 화장로의 안전성 점검 등 - 강력한 법률적 제한 필요
- 묘지를 이장 또는 개장하는 경우 유골을 먼 지역의 화장장까지 운반하고, 대기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가 적지 않게 나타남.
 - 관습으로도 묘역 안의 유골을 묘역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전래되고 있음
 - ※ 화장장 부족을 해결하는 적절한 정책으로 보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찬성(34.3%), 인허가로 전환하고 철저한 관리 필요(25.4%)로 전체의 59.7%를 차지

□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만, 제29조의2에 따른 장례식장에서 화장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내용	목적
제29조의2(장례식장에서의 화장) ①장례식장 영업자는 장례식장에 보건복지가족부장이 정하는 설치규모 범위내의 화장로(시체 또는 유골을 고온으로 연소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e-stop 서비스 기능 강화 • 장례식장 영업환경개선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 방지
③시장등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장례식장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심의를 거쳐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안에 개설되어 있는 장례식장이외의 장례식장 2. 관할 구역내에 화장시설이 소재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설치된 장례식장 3. 그 밖에 보건위생상의 위해나 주거 등 생활환경을 해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장례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충족 장례식장의 화장로 설치 • 주민참여 보장
④제3항에 의한 신고수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장사법의 우위성 확보

3. 사망정보의 연계체계 등 장사업무의 전자화 구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사시설의 예약, 이용 및 관리 등을 전자적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강구
 - 의료기관 등 의료인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포함) 등을 발급하거나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례의식이나 매장, 화장 등을 행할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함.

- 사망자 인적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한 공공단체에 신속히 알리도록 함.

〈장사정보종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화장시설 이용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단일화된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화장시설·시간에 화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업체에 의해 상업적 목적으로 화장서비스가 선점 예약되는 사례 방지
- 사망자 인적사항을 의료기관,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으로부터 조기에 획득하여 사망정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지급기관과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에 신속히 알려 사망자에 대한 복지급여 업무에 활용**
- * 사망자 정보: 성명, 주민번호, 사망일, 주소, 연고자 등
- 장사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합리적인 정보(위치, 사용료, 시설현황, 운영주체 등)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장사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올바르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묘지정보를 통합 DB화하여 GIS기반 묘지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이행 기반 구축
- 국가 장사정보종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대국민 장사서비스의 제공과 국가통계 인프라의 생산·공유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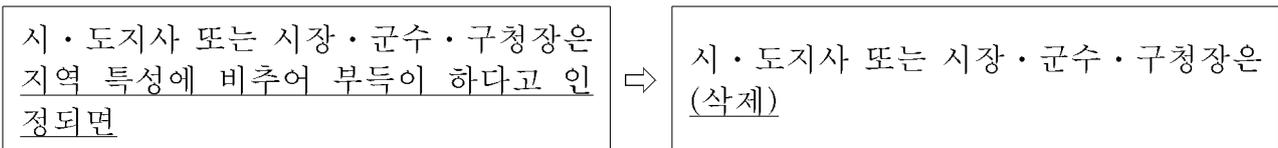
□ 현황 및 문제점

- 화장시설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일부 업체가 상업적 목적으로 화장서비스를 대거 선점예약하거나 무단 취소함에 따라
 - 화장시설 실수요자가 **4일장을 치르거나 이용가능한 화장시설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함에 따른 불편이 매우 컸고**
 - 취소된 시간의 화장로가 가동되지 못함에 따른 **화장시설 자원의 낭비**
-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함에 따라 사망자에게 보험료나 재산세가 청구되는 경우와 사회보험·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금이 **계속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국가·공적재원의 낭비 발생**
- 장사제도와 관행이 점차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안내·홍보체계가 없어, 장사담당공무원은 단순·일회성 민원 대응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 국민들도 법규와 관련 정보를 몰라 묘지·분묘를 불법적으로 조성하거나 비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점 제기

4. 지자체간 공동 장사시설 설치·조성 기준 완화

-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설치·운영을 지역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건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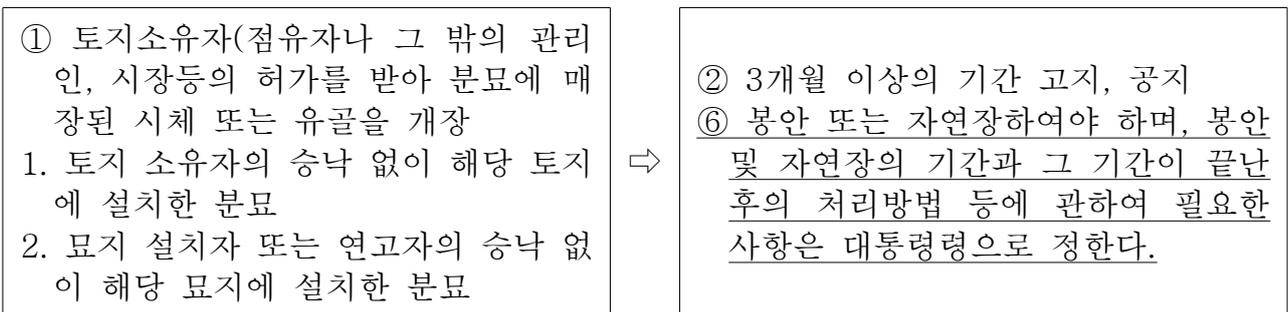
○ 자유롭게 지자체간 원활한 공동설치·이용 활성화 유도



5.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 무연분묘의 개장 시 봉안 또는 자연장 허용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하는 경우, 봉안 및 자연장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방법 등을 정함.



6. 장례식장영업의 “신고제” 도입

-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수준 제고, 이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시설의 안전성 확보, 시설의 남설에 따른 과다경쟁 방지 등을 위하여 장례식장영업을 신고제로 전환
- 장례식장 영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장례식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례식장안에서의 시체의 안치·염습 등에 관한 보건위생관리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 장례식장영업자 및 시체의 안치·염습을 하는 종사자는 매년 시체의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장례식장의 질적 향상 및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체계 개선으로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 장례식장의 공정한 거래 및 신뢰성 확보로 장례식장 산업 경쟁력 제고
 - *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여부(일반국민) : 찬성 75.9%, 생활개혁실천협의회 등('09.11)
 - * 장례식장 영업 : 허가제('73년)→ 신고제('93년) → 자유업('00년)

□ 현황 및 문제점

- 장례식장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 팽배
 - 장례식장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저하 등 부정적 인식 고착
 - 장례절차가 복잡·어려움으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형성
 - * 장례용품 및 식음료 강매·폭리, 불공정 거래 등 소비자 피해
- 장례식장 서비스의 역할 및 비중 증대
 - 공동주택·편의주의 등 장례공간 한계로 장례식장 이용률 증가

* 연간 사망자 25만명중 장례식장 이용자 약 20만명(약 80%)

* 장례식장이용자(유족·문상객) 50~100명: 20만명×(50~100명)= 100~200만명 추정

- 장례기간 보통 3일장중 2일은 장례식장안에서 일정 소화, 총 장례비용중 장례식장 이용비용이 가장 큰 비중(약 50~60%) 차지

- 장사정보종합시스템 구축관련 사망자 정보획득 및 장례식장내 화장로 시설 허용 등에 따른 제도화 도입 필요

○ 무분별한 장례식장 남설로 장례식장 시장질서 혼란

- 자유업인 장례식장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공급과잉 수급불균형

* 전국 장례식장 설치현황: 839개소(의료기관 575개소, 전문 264개소)

* '95년 321개소 → '00년 465개소 → '05년 763개소 → '08년 839개소

* 빈소수는 4,152개로 일평균 사망자수 670명, 적정공급 1,340개(약 3배 공급과잉)

- 장례식장 공급과잉으로 저가경쟁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 및 서비스 질적 저하, 부당한 고객 선점 등 음성적 거래 이익 등 소비자 피해 가중

○ 장례식장 유사업종인 상조업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등록제 추진 중

○ 장례식장 설치기준, 보건위생기준 미비로 유족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위해

□ 장례식장 영업신고제 도입

제29조(장례식장영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29조(장례식장 영업 신고 등) ①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화장을 할 수 있는 화장로를 갖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신고제도의 당위성

-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장례식장 영업을 자유업으로 하는 것과 특히 자유업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자 등록 현황자료 유지, 시정 명령, 폐쇄명령 등을 규정한 것은 불합리함.

- 시신을 모시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 인허가 등으로 격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3.1%로 나타남.

※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2007년 2월 29일 개정시, 동물장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함.

-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장례식장의 보건위생관리기준 강화

②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장례식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례식장안에서의 시체의 안치·염습 등에 관한 보건위생관리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수준 제고, 이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시설의 안전성 확보, 시설의 남설에 따른 과다경쟁 방지 등을 위하여 장례식장영업을 신고제로 전환
 - 특히 장례식장안에서의 시체의 안치·염습 등에 관한 보건위생관리기준은 매우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선진국에서는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외국의 연구사례
 - Robyn 등(1998)은 장례관련 종사자가 비장례종사자에 비해 tuberculin skin test 반응이 2배
 - Sally 등(1989)은 미국 보스턴 내 133명의 embalmer를 대상으로 한 혈청학적 검사에서 HBV의 양성정도가 일반적인 수혈자(7%)에 비해 2배(13%) 높다고 하였다. CDC에서는 일상적 글러브 사용, 안구보호대 착용, 가운, 방수되는 에이프런(aprons)을 사용할 것을 권고.

- 일본내 대학병원에서 행해졌던 500구의 병리해부결과 감염증 확인된 것이 전체의 65.2%의 326예. 주의해야 할 것은 감염성이 강한 간염바이러스와 결핵이 비교적 상위를 차지.
- 미국내 총 5년동안 785구의 사체기증자 중 HIV에 2명, HBV에 6명, HCV에 10명이 양성 반응. 이들을 다루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강구 필요.
- 미국 Maryland의 1302명의 장례종사자를 상대로 한 혈청학적 검사에서 HIV, HBV의 감염률이 0.8%, 4.6%. 작업장내에서 혈액을 통한 감염의 예방이 중요(해당 백신 맞을 것을 권고).
- John 및 Albert(1989)는 HIV의 경우 사체내 실온(23-25℃)에서 15일 생존이 가능.
- 1982년 미국의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에서는 확실치 않은 모든 사체에 대해 혈액과 체액에 주의를 요할 것을 공포(특히 HIV, HBV, HCV와 같은 혈액관련 질병에 적용).
- Felicia(1994)는 HIV 양성자의 경우 결핵양성률이 더 높게 나옴. 따라서 HIV 감염자의 결핵 전파는 더욱 주의해야 하고 위험하다고 경고.

□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의 보건위생관리교육 실시 : 신설

③ 장례식장영업자 및 시체의 안치·염습을 하는 종사자는 매년 시체의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실시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2차 감염예방을 위해 시신 처리시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함.
 - 병원내 감염률의 증가
 - 다양한 질병이 새로이 생성되고 전염되는 현 시점에서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장례식장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시체의 안치·염습을 하는 종사자는 매년 시체의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시체를 관리하도록 하고, 시설관리 및 사용에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미국등 외국의 경우, 사체에 대한 존엄성 유지 및 사체로 인한 질병감염을 방지하고자 법률로 제한하고 있으며, 종사자 또한 국가에서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한 교육실시해 통제
 - IATA 규정(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 항공 수송 협회)
 - 미국의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직업안전위생관리국) 등),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7. 화장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사설 화장시설(화장로) 비용보조 근거 마련

- 화장시설 공급의 촉진·장려를 위하여 공설 화장시설 및 화장로에 대해서만 국가 비용보조를 한 것을 사설 화장시설 및 화장로 설치·관리에 대해서도 비용보조토록 확대

- 국가는 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화장시설 또는 화장로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보조**

제36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는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는 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화장시설 또는 화장로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재개발, 시한부묘지제 등의 본격 실시로 개장유골의 화장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화장로를 설치하는 경우 국고를 지원함.

- 단, 환경친화적인 환경을 갖추는 경우로 제한해야 할 것임.

8. 공설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위탁주체와 범위 확대(안 제38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 등도 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가능

- 장사관련 전문인력의 적극 활용
- 장사산업 활성화 기여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②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목장립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 사유

화장수요 증가에 따른 화장로 설치가능시설의 확대 및 개장유골의 현존지에서도 화장을 허용하여 화장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사망정보의 연계체계 구축 등 장사업무의 전자적 처리방법을 구축하여 화장시설 예약편의 제고, 복지급여 누수방지 및 한시적 매장제도의 실효성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자유업인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보건위생 수준 제고 및 이용서비스 질적 향상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사행정개선과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고 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립묘지 등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이 법 적용 배제(안 제3조)

- 1) 국립묘지 등 국가가 설치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묘지이외에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 배제될 수 있도록 함.

나. 화장시설(화장로) 설치·장소 기준 완화(안 제7조제2항)

- 1) 화장시설 및 일부예외 장소(사찰의 전통다비의식, 화장시설 없는

도서벽지) 에서만 화장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개장유골을 현존지에서도 화장할 수 있도록 함.

- 2)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 제외)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규모 범위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사망정보의 연계체계 등 장사업무의 전자화 구축(안 제8조제1항, 제8조의2)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사시설의 예약, 이용 및 관리 등을 전자적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
- 2)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의료기관 등 의료인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포함) 등을 발급하거나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례의식이나 매장, 화장 등을 행할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함.
- 3)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사망자 인적사항을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신속히 알리도록 함.

라. 지자체간 공동 장사시설 설치·조성 기준 완화(안 제13조제2항)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설치·운영을 지역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

로 설치할 수 있는 조건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유롭게 지자체간 원활한 공동설치·이용을 유도함.

마.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할 경우 그 시체 또는 유골의 처리 기준 마련(안 제27조제6항)

- 1) 토지 소유자 등은 개장할 경우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하도록 하며, 봉안 및 자연장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제” 도입(안 제29조제1항~제4항)

- 1)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수준 제고, 이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시설의 안전성 확보, 시설의 남설에 따른 과다경쟁 방지 등을 위하여 장례식장营业을 신고제로 전환
- 2) 장례식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례식장안에서의 시체의 안치·염습 등에 관한 보건위생관리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장례식장 영업자 및 시체의 안치·염습을 하는 종사자는 매년 시체의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사. 화장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사설 화장시설(화장로) 비용보조 근거 마련(안 제36조제1항)

- 1) 화장시설 공급의 촉진·장려를 위하여 공설 화장시설 및 화장로에 대해서만 국가 비용보조를 한 것을 사설 화장시설 및 화장로 설치·관리에 대해서도 비용보조토록 확대

아. 공설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위탁주체와 범위 확대(안 제38조제2항)

- 1)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 이외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탁범위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묘지”를 “장사시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제29조의2에 따른 장례식장에서 화장하거나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여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망진단서 발급 및 장사업무의 전자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사시설의 예약, 이용 및 관리 등을 전자적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에 따라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거나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례의식 서비스 제공 또는 매장, 화장 또는 봉안 등을 행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전자적 처리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알게 되는 사망자 인적사항, 매장· 화장· 자연장· 개장 또는 봉안 처리현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제3항에 사망자 인적사항 및 연고자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제공에 관하여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제2항 중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를 받은 해당 분묘에 대하여는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하여야 하며, 봉안 및 자연장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장례식장영업)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를 “(장례식장 영업 신고 등)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화장을 할 수 있는 화장로를 갖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장례

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장례식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례식장안에서의 시체의 안치·염습 등에 관한 보건위생관리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장례식장영업자 및 시체의 안치·염습을 하는 종사자는 매년 시체의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실시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장례식장에서의 화장) ① 장례식장 영업자는 장례식장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설치규모 범위내의 화장로(시체 또는 유골을 고온으로 연소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장례식장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심의를 거쳐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안에 개설되어 있는 장례식장이외의 장례식장
2. 관할 구역내에 화장시설이 소재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설치된 장례식장
3. 그 밖에 보건위생상의 위해나 주거 등 생활환경을 해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장례식장

④ 제3항에 의한 신고수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1조중 “및 사설자연장지의”를 “·사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의”로, “또는 자연장지의”를 “·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의”로 한다.

제3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 제2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화장로를 설치한 때

제36조제1항 중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를 “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화장시설 또는 화장로의”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7조제6항에 따른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하지 아니한 자

제42조제1항제12호 중 “설치기준”을 “설치기준 또는 보건위생관리기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부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2조제1항중 “11”을 “16”으로, “12”를 “17”로, “13”를 “18”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가 설치·운영하는 <u>묘지</u> 에 관한 적용배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u>묘지</u> 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국가가 설치·운영하는 <u>장사시설</u> 에 관한 적용배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u>장사시설</u> 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생략) 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u>제29조의2에 따른 장례식장에서 화장하거나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u>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u>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u><신 설></u>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u>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여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u>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사망진단서 발급 및 장사업무의 전자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장사시설의 예약, 이용 및 관리 등을 전자적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에 따라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거나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례의식 서비스 제공 또는 매장, 화장 또는 봉안 등을 행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전자적 처리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알게 되는 사망자 인적사항, 매장·화장·자연장·개장 또는 봉안 처리현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제3항에 사망자 인적사항 및

연고자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제공에 관하여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생략)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 봉안시설 및 공설 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 ⑤ (생략)
<신 설>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 봉안시설 및 공설 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를 받은 해당 분묘에 대하여는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하여야 하며, 봉안 및 자연장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장례식장영업) ① 시장·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생략)

④ (생략)

<신 설>

제29조(장례식장 영업 신고 등) ①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화장을 할 수 있는 화장로를 갖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장례식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례식장안에서의 시체의 안치·염습 등에 관한 보건위생관리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장례식장영업자 및 시체의 안치·염습을 하는 종사자는 매년 시체의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 실시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장례식장에서의 화장) ①

장례식장 영업자는 장례식장에 보건

<신 설>

<신 설>

<신 설>

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설치규모 범위내의 화장로(시체 또는 유골을 고온으로 연소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장례식장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심의를 거쳐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안에 개설되어 있는 장례식장이외의 장례식장
2. 관할 구역내에 화장시설이 소재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설치된 장례식장
3. 그 밖에 보건위생상의 위해나 주거 등 생활환경을 해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장례식장

④ 제3항에 의한 신고수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1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사설 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제36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②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

제31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사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의-----

-----·

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의

-----.

1. ~ 5. (현행과 같음)

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 제29조의 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화장로를 설치한 때

제36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는 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화장시설 또는 화장로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 (벌칙) (생략)

1. (생략)
2.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한 자
3. ~ 10. (생략)

제42조 (과태료)

① (생략)

1. ~ 10. (생략)

<신설>

1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신설>

<신설>

<신설>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 (벌칙)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화장시설

3. ~ 10. (현행과 같음)

제42조 (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27조제6항에 따른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 또는 자연장하지 아니한 자
12.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보건위생관리기준,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3.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9조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생 략)

12. (생 략)

13. (생 략)

〈신 설〉

16. (종전의 제11항과 같음)

17. (종전의 제12항과 같음)

18. (종전의 제13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